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완화 논의 재개

□ 일본 금융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제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.

-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97조 2호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식, 부동산, 외화 자산, 무담보 자산, 낮은 등급 여신에 대해 각각 총자산의 30%, 20%, 30%, 10%, 3%의 비중 내에서만 운용해야 함.
- 업계는 8년간 제자리인 제한 범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 내지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, 금융청이 이를 받아들여 금융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됨.
- 최근 금융위기 진정으로 자산운용 범위 확대 요구가 다시 거세지자 금융청은 국내 주식 및 외화자산 운용을 30%로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가을부터 논의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임.

□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완화 조치는 업계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풍토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
-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외화상품 등 가격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음.
- 그러나 영업수익 저하로 자산운용수익 증대가 절실해지고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 시장 안정화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운용이 요구되면서 유연한 자산운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.
- 일각에서는 이번 자산운용제한 완화 조치가 자칫 재무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, 보험업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(보험매일신문, 8/3)